

##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7일

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시험명	직렬(직류)	계급	선발예정인원	구분			시험과목(1·2차시험 병합실시)
				일반인	장애인	저소득층	
공개경쟁 임용 시험	교육행정	9급	45	41	2	2	1차 필수: 국어, 영어, 한국사 2차 선택: 교육학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
	전산	9급	2	2			1차 필수: 국어, 영어, 한국사 2차 필수: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
	사서	9급	4	3	1		1차 필수: 국어, 영어, 한국사 2차 선택: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,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
	보건	9급	3	3			1차 필수: 국어, 영어, 한국사 2차 필수: 공중보건, 보건행정
	시설(건축)	9급	4	4			1차 필수: 국어, 영어, 한국사 2차 필수: 건축계획, 건축구조
	공업(일반전기)	9급	1	1			1차 필수: 국어, 영어, 한국사 2차 필수: 전기이론, 전기기기
	공업(일반기계)	9급	3	3			1차 필수: 국어, 영어, 한국사 2차 필수: 기계일반, 기계설계
경력경쟁 임용 시험	공업(일반기계)	9급	1	1			1차 필수: 물리 2차 필수: 기계일반, 기계설계
합계			63	58	3	2	

※ 사회는 법과 정치, 경제, 사회·문화 / 과학은 물리 I, 화학 I, 생명과학 I, 지구과학 I / 수학은 수학 I, 수학 II, 확률과 통계, 미적분 I에서 출제됨

※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

## 2. 시험 방법

- 가. 제1·2차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  
 나.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, 과목당 20문항, 4지택1형  
 다. 필기시험시간

구분	시 험 시 간		구분
	공개경쟁임용시험(5과목)	경력경쟁임용시험(3과목)	
필기시험	100분 (10:00 ~ 11:40)	60분 (10:00 ~ 11:00)	

라.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며,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·도교육청 공동출제

- 1)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: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
 - 위탁출제 과목

구분	과목수	대 상 과 목
9급	11	국어, 영어, 한국사, 교육학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 수학, 행정학개론,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

- **위탁출제 과목 시험문제**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**공개,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.**

- 2) 공동출제 : 17개 시·도교육청  
 - **공동출제 과목 시험문제**는 **비공개**하며, **문제책은 회수합니다.**

마. 제3차 시험 : 제1·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, 인·적성검사 및 면접시험

## 3. 응시 자격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거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(적용기준일 : 면접시험일)

### 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※ 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.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나. 응시연령

구분	응시연령	해당생년월일
공개경쟁임용시험	18세 이상	1999.12.31.이전 출생자
경력경쟁임용시험	18세 이상	1999.12.31.이전 출생자 (단, 2000년 1~2월생으로 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)

다. 거주지 제한 : 아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
※ 단,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(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대구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(졸업예정자)로 제한)

-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
-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,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-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  -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
- 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

라. 자격 및 학력제한

-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함(면접시험일 기준)

구분	직 렬	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제한
공개 경쟁	전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술사(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)</li> <li>○ 기사(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)</li> <li>○ 산업기사(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)</li> <li>○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</li> </ul>
	사 서	○ 1·2급 정사서, 준사서
경력 경쟁	공 업 (일반기계)	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(관련) 학과 : 기계, 자동차(자동차정비), 운전, 판금, 용접, 배관, 기관, 인쇄공업, 계량

- 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대상 자격으로 인정됨
- ※ **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“2017년도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(예정자)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**

바. 장애인 구분 모집

-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(필기, 시각, 청각, 언어구사 등)에 지장이 없어야 함
-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
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(단, 중복접수 불가)
-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

유공자증)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

※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 「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(진단서)를 제출하여야 함

#### 사. 저소득층 구분 모집

○ 저소득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,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)이 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

※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보호)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보호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보호대상자)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. (단,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)

○ 저소득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(단, 중복접수는 불가)

○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보호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

※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(동일세대원에 한함)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방문 전 시·군·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·한부모가족담당자(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)에게 유선으로 신청바람

### 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(인터넷)	구 분	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접수기간 : 4.17(월) 09:00 ~ 4.21(금) 18:00 ※취소기간 : 4.22(토) 09:00 ~ 4.24(월) 18:00	필기시험	6. 1(목)	6. 17(토)	7. 17(월)
	인·적성검사	7. 17(월)	7. 25(화)	-
	면접시험	7. 17(월)	8. 10(목)	8. 21(월)

가. 시험장소(필기, 인·적성검사 및 면접) 및 시험시간,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dge.go.kr>)에 공고하고,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

- 나. 필기시험 성적확인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때,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때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(본인 성적에 한함)
- 다.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·적성검사를 실시하며, 인·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.(필기시험 합격자는 인·적성검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.)

## 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접수만 가능)

### 가. 접수방법

- 인터넷 온라인채용사이트(<http://edurecruit.dge.go.kr>)에 접속하거나,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dge.go.kr>)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음
-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, 시스템 장애 및 **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**

### 나. 접수일정

- 접수기간 : 2017. 4. 17(월) 09:00 ~ 2017. 4. 21(금) 18:00

### 다. 응시수수료

- 응시수수료 5,000원을 **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**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  
**※ 휴대폰 결제가 불가 하니 계좌이체,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**
- 저소득층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) 응시자는 **응시 수수료를 면제**합니다. **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정상 접수됩니다**(원서 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예정) ⇒ ‘교육행정 저소득’ 구분모집 외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
- **‘교육행정 저소득’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.**

### 라.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

-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 또는 GIF) 규격 : 3.5cm×4.5cm기준, **100Kbyte미만**
-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및 보정하지 않은 사진으로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,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등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됨  
**(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)**

### 마.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
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자격미비자,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,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함
  - ※ **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가능함**
-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림
-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,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
- 원서접수 접수시에는 접수증(번호)이 출력되고 "응시표" 출력은 2017. 6. 1(목)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함(\*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)
  - ※ **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,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으므로 응시표 출력기간(2017.6.1.이후)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.**
-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(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되었음을 확인)을 하여야 하며,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
- PC 환경 : 운영체제(윈도우 7, 8(32bit)), 익스플로러 버전(7.0~11.0(32bit))은 지원하고 있으나,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.
- 거주지,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
-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

## 6. 가산 특전

가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(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구분	가산비율	비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
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

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 또는 3%)을 가산함

- 단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(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)
-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(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)

○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(10% 또는 5%)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(☎1577-0606),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(5% 또는 3%)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(044-202-3258)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사회복지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

나.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)

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한 다음의 공통적용 자격증 또는 직렬(직류)별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

1) 공통적용 자격증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) 가산 비율(전산직 제외)

직무분야	임용계급	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		
통신·정보처리분야	9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	1%	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	0.5%
사무관리분야	9급	컴퓨터활용 능력 1급	1%	워드프로세서(2012.1.1전 취득은 1급만 인정)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%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(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)

2) 직렬(직류)별 자격증 가산점

○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

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

○ 직렬(직류)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

직급	자격증		가산비율
	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	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	
교육행정9급	-	변호사	5%
공업(일반기계) 9급	기술 사 : 기계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차량, 건설기계, 용접, 금형, 산업기계설비, 기계안전, 공장관리, 품질관리, 소방 기 능 장 : 기계가공, 에너지관리, 철도차량정비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정비, 용접, 금형제작, 판금제관, 배관 기 사 : 일반기계, 메카트로닉스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기계설계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농업기계, 에너지관리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승강기, 소방설비(기계분야) 산업기사 : 컴퓨터응용가공, 기계가공조립, 생산 자동화, 기계설계, 공조냉동기계, 에너지관리, 철도차량, 철도차량정비, 철도운송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치공구설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기계정비, 판금제관, 농업기계, 배관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영사, 승강기, 소방설비(기계)	-	5%
	기 능 사 : 컴퓨터응용선반, 연삭, 컴퓨터응용밀링, 기계가공조립, 생산자동화, 전산응용기계제도, 공유압, 공조냉동기계, 에너지관리, 철도차량정비, 자동차정비, 자동차차체수리, 건설기계정비, 양화장치운전, 궤도장비정비, 정밀측정, 용접, 특수용접, 금형, 기계정비, 판금제관, 농기계정비, 농기계운전, 배관, 동력기계정비, 영사, 승강기	-	3%
공업(일반전기) 9급	기 술 사 : 발송배전, 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, 철도전기신호, 전기안전, 품질관리, 소방 기 능 장 : 전기 기 사 :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산업안전, 승강기, 품질경영, 소방설비(전기분야) 산업기사 :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승강기, 소방설비(전기분야)	-	5%
	기 능 사 : 전기, 철도전기신호, 승강기	-	3%

직급	자격증		가산 비율
	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	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	
시설(건축)9급	기술사: 건축전기설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안전, 소방 기능장: 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 기사: 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 산업기사: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건축목공, 방수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	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용: 건축사	5%
	기능사: 전산응용건축제도, 타일, 미장, 조적, 온수온돌, 유리시공, 비계, 건축목공, 거푸집, 금속재창호, 건축도장, 철근, 방수, 실내건축, 플라스틱창호		3%
보건 9급	기술사: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방사선관리, 광해방지, 인간공학 기사: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광해방지, 인간공학 산업기사: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  임상심리사 1급, 임상심리사 2급	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: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특수, 일반), 방사선 취급감독자, 응급구조사 1급, 보건교육사 1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: 임상병리사, 의무기록사, 방사선사, 간호사, 조산사, 물리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작업치료사, 위생사, 영양사, 응급구조사 2급, 보건교육사 2급	5%
	기능사: 식품가공	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: 보건교육사 3급	3%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됨

※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점 적용

#### 다.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○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(가산비율)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

-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,

- 자격증 종류(가산비용) 및 번호(보훈번호)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

-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,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 (최대 2개 인정)
- 위의 "가"항과 "나"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
- 위의 "가"항과 "나"항의 “매 과목 4할 이상”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
  - ※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

## 7. 양성평등채용목표제

가. 대상시험 : 직렬별·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

나. 채용목표 : 시험실시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%

다. 실시방법

- 시험실시 단계별로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%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-3점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.
-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,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,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
  - ※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(性)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

## 8. 유 의 사 항

- 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
- 나. 응시원서상 기재착오, 누락,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다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

- 라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
- 마.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, 여권 가능),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가 시작되면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
- 바.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일반펜, 수정액, 수정 테이프 등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사. 특히,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문항은 오답으로 처리됨
- 아.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DA, 무선호출기, 이어폰 등) 및 전산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
- 자.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함.
- 차.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dge.go.kr>)에 별도 공고함

## 9. 기 타 사 항

- 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40점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, 「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짐
- 나.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<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지원 계획>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(사본)와 함께 제출
- 다.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(☎ 053-231-0564~8)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본 공고문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dge.go.kr>)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음

## 10. 인문학 면접 및 인·적성검사 실시

### 가. 인·적성검사 실시

-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·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면접시험의 보조자료로 활용(필기시험 합격자는 인·적성검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.)

### 나. 인문학 면접시험 실시

-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인문학(평가대상 도서)을 접목한 면접문항을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평가
- 출제범위 및 출제경향

시험과목	출제범위(평가대상 도서)	출제경향
면접	논어, 에밀, 명심보감 난중일기, 데미안	평가대상도서의 이해를 통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의사표현력 및 창의력 등을 인문학을 접목하여 포괄적으로 평가 가능한 문항 출제

- 면접시험 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 방법

#### ※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및 제50조의 3

-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,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, 중, 하로 평정한다.
  1.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  2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  3.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  4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  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-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
  1.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“상”으로 평정한 경우: “우수”
  2.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: “미흡”
 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: “보통”
- “우수” 등급자부터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“미흡” 등급자는 불합격으로 함.